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이의신청규정의 법률 상향 규정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6238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이의신청규정의 법률 상향 규정	2
※ 참고자료	7
1.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7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정 부
2. 제 출 일: 2026. 1. 22.
3. 회 부 일: 2026.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이의신청규정의 법률 상향 규정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임(안 제14조의2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 · 징수 등) ① ~ ⑨ (생략) <u><신설></u>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 · 징수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u>⑩ 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행 산업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 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⑪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 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u>
<u>⑩ (생략)</u>	<u>⑫ (현행 제10항과 같음)</u>

다. 검토의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4¹⁾는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²⁾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목적, 부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열악하거나 건전화 평가가 우수한 사행산업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만분의 35 미만의 비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과요건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나³⁾,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생략)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비율은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이하 이 항에서 “기본부담비율”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낮추는 비율의 합산 결과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1.~4. (생략)

③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납부금액, 산정명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⑤ (생략)

⑥ 사행산업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독촉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채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를 예방치유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부담금은 국민에게 반대급부 없는 강제적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는 시행령보다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부담금 부과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한 규정도 타당한 조치로 보임.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

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생략)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7

※ 참고자료

1.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정의

- 사행산업사업자(카지노, 경마·경륜·복권 등)가 사행산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예방·치유하기 위해 위원회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금

☐ 부과 기준 및 대상

- (부과 근거) 「사감위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부과 기준) 연간 순매출액의 10,000분의 35 (실제 0.24~0.27% 수준)
 - ※ 수익성(10%), 건전화평가(20%), 총량 준수(10%), 지방세납부(20%) 등 최대 40% 이내 감면
- (부과 대상) 7개 업종의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외국인카지노는 제외)

☐ 부담금 부과 절차

- 부담금 산정자료 제출(사업자)→ 사감위 전체위원회 부과 금액 산정·의결 (사업자별 부담금 산정)→ 사업자 통지(부과금액, 납부 기한 등 안내(5.31.)) → 납부(사업자가 정해진 기한(6.30.) 내 위원회에 납부)→ 징수(미납 시 법률에 따라 가산금, 국세채납 처분에 의해 징수)

* 이의신청 처리기한(개정안 기준)

- (신청대상) 이의가 있는 사행산업사업자
- (신청기한) 부담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한) 이의신청 접수 후 위원회 의결 거쳐 60일 이내 결과 통보